
 금융위원회	<b>보 도 자 료</b>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 하는 성장
	<b>보도</b>	<b>2019.10.30.(수) 조간</b>	

<b>책 임 자</b>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02-2100-2530)	<b>담 당 자</b>	장 지 원 사무관 (02-2100-2535)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02-2100-2970)		윤 동 옥 사무관 (02-2100-2971)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02-2100-2620)		김 영 준 사무관 (02-2100-2696)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 차 병 주(02-531-1800)		유 성 준 팀장 (02-531-1860)
	금융보안원 융합보안부장 이 문 규(02-3495-9600)		안 재 영 팀장 (02-3495-9620)

## **제 목 : 오픈뱅킹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오픈뱅킹 대국민 시범서비스 개시(10.30.~) -**

- ◆ **10.30일(수)부터 은행권은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 실시\***
  - \* 10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 ◆ **은행권은 시범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App)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
  - \* 타행계좌 잔액 이체 수수료 면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등 은행별로 서비스 준비 중
- ◆ **시범실시를 통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을 거쳐 12월 18일부터 핀테크기업 참여 등 오픈뱅킹 전면시행 예정**
- ◆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
- ◆ **금융위는 금결원·금보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전면시행(12.18.)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예정임**

# 1 추진배경

-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는 여타 금융서비스에 비해 금융, 실물, 대외 인프라 전반에 걸쳐 연결성과 파급력이 큰 금융혁신의 핵심 토대
  - \* 특히, IT, 모바일 등 핀테크기술과 결합하면서 금융결제 및 데이터의 파급력이 더욱 커짐
- 주요 선진국들은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과감한 변화와 개방을 추진

## [영국, 오픈 बैं킹(open banking) 제도 도입 사례('18.1월)]

- ✓ 은행들이 오픈 API를 통해 타은행의 고객 정보를 받아, 타은행 계좌의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은행의 결제기능 강화 및 경쟁 확대

## [EU,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도입 사례('18.1월)]

- ✓ 은행 API를 핀테크기업에 수수료 등 차별 없이 제공토록 의무화

## [일본,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API 제공 등 의무화('18.6월)]

- ✓ 핀테크기업에 대한 API 제공 기준 공시 및 기준 충족업체에 대한 제공 의무화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어려움

### ①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 필요 → 핀테크 진입이 제약된 “폐쇄적 시장”

\* 특정 은행이 제휴를 거절할 경우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

### ② 제휴시 높은 이용료\* 부과 → 핀테크기업의 “과도한 비용부담”

\* 1건당 약 400~500원 내외 수준(평균결제금액 3만원 가정시 약 1.5% 수준)

### ③ 은행도 자기고객 대상으로만 결제·송금 → “플랫폼으로 성장 제한”

### ④ 고객은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앱 설치 → “금융소비자 불편”

⇒ 글로벌 추세에 맞춰 **오픈뱅킹(Open Banking)** 도입을 통한 **금융결제망 등 인프라 개방**으로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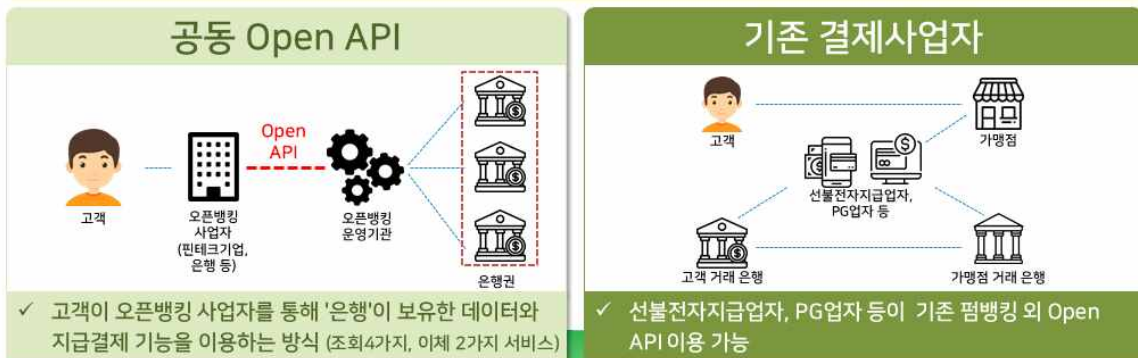
※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19.2.25, 관계부처 합동) 발표로 오픈뱅킹 도입

## 2 오픈뱅킹 개요

- ① (개념)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
  - 국내의 경우 좁은 의미의 오픈뱅킹은 지급결제 중심의 공동 Open API 시스템 확대를 의미
  - 향후, 오픈뱅킹 참여자가 다양화되고 데이터 분야를 포함할 경우 국내의 오픈뱅킹 개념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

### 《 금융권 오픈뱅킹 개념 : 현재와 미래 》

◆ 현재: 기존 결제사업자 등이 공동 Open API를 이용



◆ 미래: 공동 API 참여가 늘면서 결제분야에 마이페이먼트 사업자와 데이터 분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새로운 플레이어로 추가예정



\*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

## ② 그간 추진 경과

- 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을 통해 도입 방안 발표(금융위, '19.2.25)
- ② 은행 및 핀테크 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 및 보안기준 마련(3~6월)
- ③ 은행 및 핀테크 업계를 대상으로 「오픈뱅킹 설명회」 개최('19.6.20)
- ④ 오픈뱅킹 사전신청 접수 결과(7.24.~10.28. 현재) : 총 156개 신청  
-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138개(대형 47개, 중소형 91개)
- ⑤ 오픈뱅킹 사전보안점검 개시(10.18~, 금보원)

## ③ 주요 내용

- ① (제공서비스)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  
\* ① 출금이체, ② 입금이체 / \*\* ③ 잔액, ④ 거래내역, ⑤ 계좌실명, ⑥ 송금인정보
- ② (수수료)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를 기존 대비 1/10 수준으로 인하 (중소형은 약 1/20 수준)

API 구분		현행 비용	기본비용 (대형)	경감비용 (중소형*)	API 구분		현행 비용	기본비용 (대형)	경감비용 (중소형)
이체	출금이체	500원	50원	30원	조회	잔액조회	10원	10원	5원
	입금이체	400원	40원	20원		거래내역조회	50원	30원	20원
						계좌실명조회	100원	50원	30원
						송금인정보조회	300원	50원	30원

\* 경감비용 적용기준 : (이체) 월 거래금액 100억원 ↓ & (조회) 월 거래건수 10만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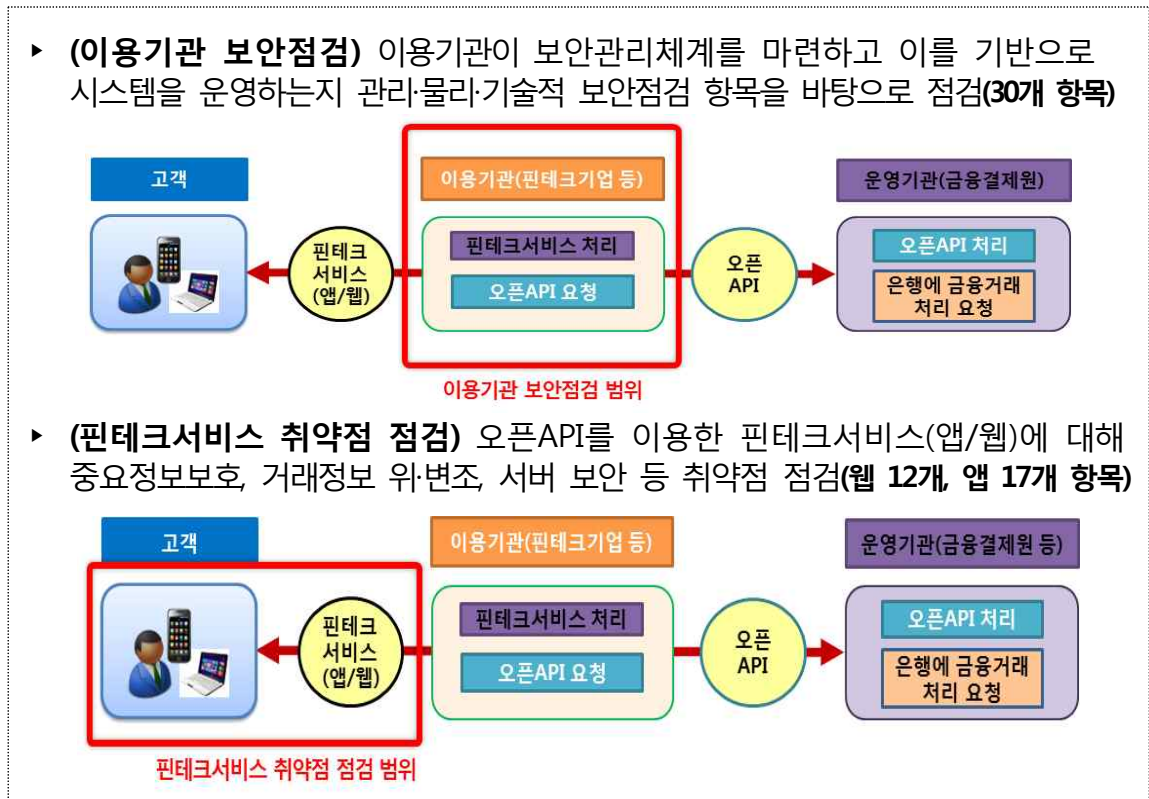
- ③ (참여기관) 은행 및 대형 핀테크업체도 참여 허용  
- 이용기관 :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 →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 + 은행  
- 제공기관 : 일반은행(16개) → 인터넷전문은행(2개) 추가
- ④ (운영시간) 종전 대비 운영시간 확대(중계시스템 정비시간 1시간 → 10분)  
- 금결원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하여 사실상 24시간(00:05~23:55), 365일 운영

#### 4 보안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방안

①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오픈뱅킹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 강화**

- 핀테크 보안지원 추경 예산(9.85억원)을 통해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보안점검 비용\***을 지원

\* 기업당 점검비용의 75%를 지원, 자부담 25%는 최초에 한해 금보원 부담



② 기존 운영시스템 증설\*,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중계시스템 안정성 확보

\* (기존 저장용량) 4TB → (증설 후) 60TB(전면시행시까지)

\*\* FDS(Fraud Detective System) : 금융거래시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나 평소와 다른 거래가 발생시 거래를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

③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시 운영기관(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

\* 기본 보증한도를 일간 출금한도의 200%로 하여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조정(최저한도 100%, 최고한도 300%)

## 5 기대효과



### < 금융산업 전반 >

-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경쟁·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저비용 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로 상거래 전반의 거래비용 절감

### < 핀테크 기업 >

- 1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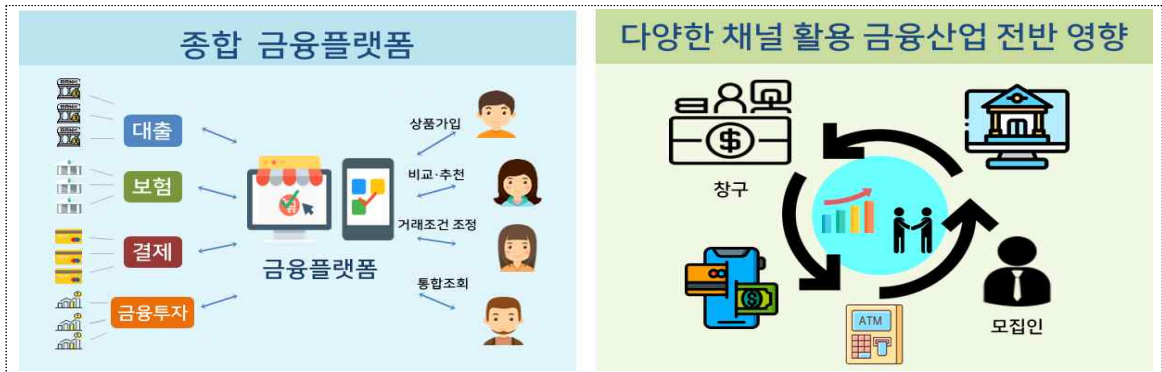


- 2 조회, 이체 등을 결합한 고객니즈 반영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

\* 예: 영국 consents.online사의 고객동의관리서비스 등

## < 은행 >

- ① 해당 은행 고객 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 가능
- ②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획득 및 유지, 새로운 서비스 및 금융상품 개발, 유통 등 은행 및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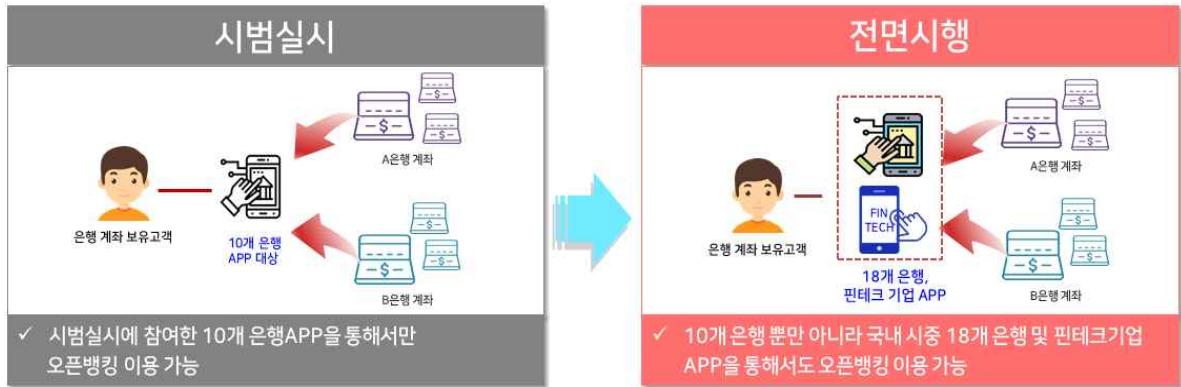
## < 금융소비자 >

- ① 국민들은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 \* 단순 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 가능
- ②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 및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로 금융노마드(Financial Nomad)\* 출현 등 국민 금융생활 획기적 변화
  - \* 금리, 부가서비스(자산관리서비스 등) 등 혜택에 따라 고객이 이동하는 현상
- ③ 비대면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 3 시범실시 주요내용

- ① (배경) 전면시행(핀테크기업 및 은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시범서비스를 우선 실시하여 고객인지도 제고 및 준비사항 등 최종 확인·보완



- ② (개요) 10.30.(수) 9:00부터 10개 은행이 대고객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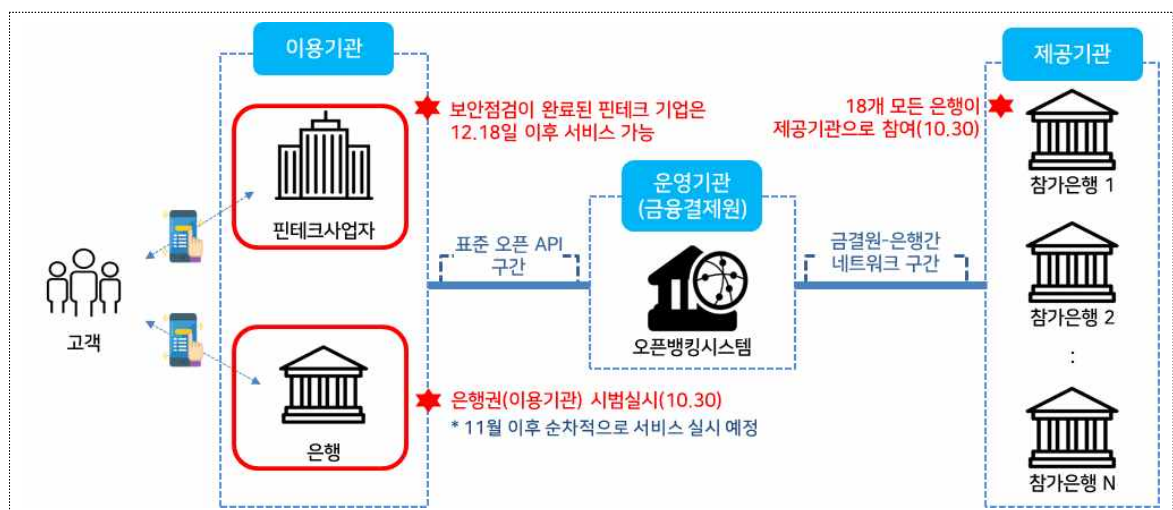
- 참여은행 :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 제공기관(참가은행)으로서의 역할은 10.30.(수)부터 18개 모든 은행이 실시

-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예정

\*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

-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 업체부터 12.18일 이후 서비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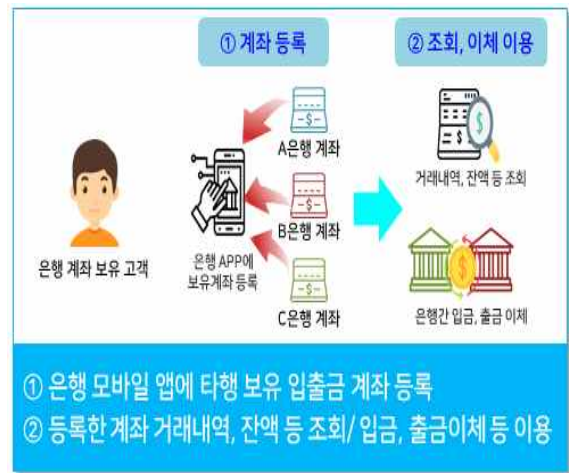
③ (이용방법)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

- 은행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 후 오픈뱅킹 가능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등

- 해당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은 계좌 개설\* 후 이용 가능

\* 일부 은행은 입출금계좌개설 없이도 은행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



① 은행 모바일 앱에 타행 보유 입출금 계좌 등록  
 ② 등록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조회/입금, 출금이체 등 이용

④ (보완 필요사항) 시범실시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어 전면시행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추진 중

- 당분간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은 계좌번호 직접입력 필요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하여 보유 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11.11.)

\* 모든 은행 등의 본인 명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휴먼계좌의 잔고이전을 지원 하는 서비스('16.12월 시행)

-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 입금 제한

\* 현재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계좌기반 결제는 제한

⇒ 전자상거래 이용 등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입금이체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 중

- 우선, 거래채널은 비대면방식(모바일·인터넷뱅킹) 한정, 대면방식 제한

⇒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대면거래(은행점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 검토

\*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점포 방문시 사전동의를 거쳐 오프라인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가능

⑤ (은행별 주요 서비스) 은행별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은행명	서비스 주요 내용
NH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적용(10.30), 올원뱅크 적용(11월 예정) 등을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확대 계획</li> <li>▶ 기본 서비스인 조회, 이체 뿐 아니라 앱별 특성을 감안한 모바일 ATM, 터치페이서비스, 모임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 서비스 준비 중</li> </ul>
신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한은행의 쓸(SOL)을 전면 개편하여 기존 신한은행 거래가 없던 고객도 금융거래를 쓸(SOL)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li> <li>▶ 타행계좌 잔액을 이체 시 오픈뱅킹 수수료 전액 무료로 제공할 계획</li> </ul>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은행 'WON뱅킹' 앱을 통해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등 서비스 제공</li> <li>▶ 카카오톡, 네이버 키워드,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계좌등록 및 출금이체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 체험 유도</li> </ul>
KEB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큐' 앱을 통해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등 서비스 제공</li> <li>▶ 오픈뱅킹 본격실시 이후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 준비중</li> </ul>
IBK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NE뱅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오픈뱅킹을 활용한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등 서비스 제공</li> <li>▶ 오픈뱅킹 본격실시 일정(12월)에 맞춰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인터넷뱅킹, ATM 등)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출시 예정</li> </ul>
KB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B스타뱅킹', '리브' 앱 및 인터넷뱅킹에 오픈뱅킹을 활용한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상품가입 등 서비스 제공</li> <li>▶ 시범실시 이후 자산관리, 외환 등 서비스 확대를 준비 중이며, 비대면 채널(앱/웹), 대면채널(영업점)을 통한 다양한 경품 이벤트 진행 예정</li> </ul>
BNK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뱅킹' 및 '썸뱅크' 앱을 통해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 제공</li> <li>▶ 썸패스 결제(카드, 현금없이 계좌기반(QR/바코드) 결제서비스) 시 연결된 부산은행 계좌 잔액이 부족할 경우 타행계좌에서 충전하여 결제 허용</li> </ul>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BANK' 앱을 통해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등 서비스 제공</li> <li>▶ 시범실시 이후 다양한 서비스 출시 준비중이며, 12월 본격실시 일정 맞춰 대고객 이벤트 계획 중</li> </ul>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등 서비스 제공</li> <li>▶ 시범실시 이후 차별화된 서비스 출시 준비중이며, 창립 50주년 기념 (12.10.) 이벤트와 연계하여 대고객 홍보 예정</li> </ul>
BNK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유뱅크' 앱을 통해 타행계좌 조회 및 이체 등 서비스 제공</li> <li>▶ '20년 상반기 중 앱 고도화를 통해 자금집금서비스, 환전 등 서비스 확대</li> </ul>

## 4 향후 추진계획

### ① 차질없는 **오픈뱅킹 전면시행**을 위해 **체계적 준비** (연내)

- 시범실시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 성능·과부하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처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서비스 보완필요사항 추가 점검·개선을 통해 소비자 불편 해소
- 핀테크기업의 오픈뱅킹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보안점검 추진

### ② 오픈뱅킹 **법적 안정성 마련** 및 **생태계 확산** (20년 중)

-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참여가능 핀테크 업체 범위 확대(전자금융법 개정 예정)

\*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

-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 뿐 아니라 데이터 분야로 오픈뱅킹의 외연을 확장(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중)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하여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 ③ “Open Banking”에서 “Open Finance”로 **확대** (20년부터)

-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검토

- 6개 조화·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을 다양화하는 한편, 마이데이터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분야로의 기능 확장 검토

\* 개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p>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 십시오. <a href="http://www.fsc.go.kr">http://www.fsc.go.kr</a></p>	<p>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p>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	---	---	---	---

## 참 고

## 오픈뱅킹 해외사례

- (오픈뱅킹 정책) 오픈뱅킹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로서 해외 주요국은 최근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미 오픈뱅킹 정책을 시행
  - 특히 EU는 PSD2 시행, 영국은 PSR(지급결제업무규칙), 일본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 API을 핀테크 기업 등 외부에 개방하도록 의무화

국가명	오픈뱅킹 관련 정책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도입('18.1월)</li> <li>✓ 은행 API를 핀테크기업에 수수료 등 <b>차별 없이</b> 제공토록 의무화</li> <li>○ <b>GDPR</b>(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b>개인정보이동권</b>'을 도입하여 <b>고객의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b>('18.5월)</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9대 주요 은행 대상 오픈 API 서비스 실시</b>('18.1월)</li> <li>✓ 은행들이 오픈 API를 통해 타은행의 고객 정보를 받아, 타은행 계좌의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 실시 → 은행의 결제기능 강화 및 경쟁 확대</li> <li>○ 英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는 기술사양, 보안 등 <b>API 표준요건을 담은 Open Banking Standard 3.0</b> 발표('18.9월)</li> <li>※ 英 오픈뱅킹 API 이용건수는 19.8월 1.1억건으로 작년 동월(420만건)대비 약 26배 성장</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부에서 <b>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권고안</b> 발표('18.2월)</li> <li>✓ (<b>4대 주요은행</b>) '<b>19.7월</b> 신용·직불카드 및 예금·거래계좌부터 시작하여 <b>20.2월까지</b>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b>확대 예정</b></li> <li>✓ (<b>기타 은행</b>) 12개월 시차를 두고 <b>점진적으로 확대</b>, '22.7월 전 은행권의 전 금융상품에 대한 API 공개 예정</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API 제공 등 의무화</b>('18.6월)</li> <li>✓ <b>핀테크기업에 대한 API 제공</b> 기준 공시 및 기준 충족업체에 대해 API 제공 <b>의무화</b> (법 시행 후 2년내 은행 API 구축 노력 명시)</li> <li>⇒ 日당국, '<b>20년까지 110개 은행이 API 공개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b></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태지역 최초로 오픈뱅킹 지침 발표</b>('16년)</li> <li>✓ 정부 주도의 금융데이터 개방 유도 정책* 추진 중</li> <li>* 은행(Citi, OCBC 등), 지급결제업체(NETS) 등이 거래내역 등 약 310여종 API 개방 중이며, MAS도 감독 관련 API를 개방하여 레그테크 부문 발전 도모 중</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금융관리국에서 '<b>Open API Framework</b>'를 마련('18.7월)</li> <li>✓ <b>단계별*</b> 오픈뱅킹 추진 중</li> <li>* 1단계(은행상품 및 서비스 정보), 2단계(고객의 취득 및 신규 신청), 3단계(계좌정보), 4단계(거래처리)로 구분</li> </ul>

□ **(핀테크기업)** 주로 계좌정보서비스가 많으며, 다수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의 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 중

서비스명	제공 서비스 내용
Yodl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오픈 API 자체를 사업화한 데이터 애그리게이터</li> <li>✓ 모든 계좌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머니센터 서비스, 지출 관리, 계좌관리를 무료 제공하며 성장</li> </ul>
YO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체 YOLT*가 제공하는 계좌통합 앱 서비스 (17.6월)</li> <li>* ING Bank N.V.가 지원</li> <li>✓ 현재 35개 금융기관을 연계 중이며, 계좌간 이체,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YOLT Pay”베타버전을 출시(19.3월)하여 시범 서비스 중</li> </ul>
consents. on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동의를 효율적으로 획득 및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li> <li>✓ 고객의 모든 동의를 한 곳에서 관리(조회, 취소, 일시중지, 추가 등) 할 수 있는 웹/앱 서비스 제공</li> </ul>

□ **(은행)** 글로벌 금융권은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의 인프라를 API로 제공하고,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aP)으로 전환 모색 중

- 또한, 오픈뱅킹 API를 활용하여 타행의 금융정보를 당행 앱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계좌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은행명	제공 서비스 내용
BB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BVA API Market'를 운영 핀테크 기업에 API를 제공</li> <li>✓ BBVA의 모바일결제 앱인 Smartpay에 Alipay를 연동, 스페인 내 Smartpay 단말기가 설치된 모든 상점에서 Alipay 사용 가능</li> </ul>
HS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앱 “Connected Money” 출시(18.5월)</li> <li>✓ 자행 계좌 및 Santander, Lloyds 등 21개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 담보대출, 카드를 앱에서 조회 가능 (지출분석 서비스 제공)</li> </ul>
Barcla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모바일뱅킹 앱 내 서비스 구현(18.9월)</li> <li>✓ Lloyds, Halifax 등 7개 타 은행 계좌정보(거래내역 포함)를 한 번에 조회 가능</li> </ul>
미즈호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머니트리'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li> <li>✓ 핀테크 기업인 '머니트리'에 고객정보 API를 제공하여 PFM(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li> </ul>